

##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

| 구분             |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급        |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         | AA   | AAA     |
| 개별<br>수출<br>허가 | 가 지역 수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사면제      | 심사면제 | 심사면제    |
|                | 나·의1, 나·의2 지역 수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서류면제    |
|                |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최종사용자에게 같은 품목(동일한 HS번호 및 동일한 통제번호) 수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면제*     | 서류면제 | 서류면제    |
|                | 나·의1 지역 수출시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일(10일*) | 10일  | 5일      |
|                | 최종사용자가<br>다음 중<br>하나에<br>해당할 때<br>(단, 재판<br>매 또는<br>재수출을<br>목적으로<br>수입하는<br>경우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수출자의 최대주주<br>2. 수출자의 해외 본점<br>3.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<br>(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<br>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인 경우에 한함)<br>4. 수출자의 해외 지점<br>(수출자가 본점인 경우에 한함)     | 가<br>지역   | 허가면제 | 허가면제**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·의1<br>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면제*     | 서류면제 | 심사면제**  |
|                | 5. 암호화품목(5A002.a.1~5A002.a.4, 5B002, 5D002)을 최<br>종사용용도가 내부시스템 구축·운영 용도 혹은<br>민수용 제품 개발·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<br>서,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인 민간기<br>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허가면제      | 허가면제 | 허가면제    |
|                | 다음 중<br>하나에<br>해당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 계약 체결 없이 제5조(허가기관)에서 정한<br>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기술을<br>수출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| 허가면제 | 허가면제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. 암호기능이 주요 기능 혹은 기능군을 지원하기<br>위한 용도로만 한정되고, 공개되거나 상용화된<br>암호화 표준을 구현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저장<br>하는 민수용 소프트웨어 중 민간기업의 운영 효<br>율화 및 판촉 지원 용도, 모바일 단말기 용도인<br>경우 | -         | -    | 허가면제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. 서비스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<br>설치하고,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<br>위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별표2 제5부 제2장 주3<br>에 따른 예외조항을 만족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허가면제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. 해외에서 국내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바세나르<br>체제의 민감·초민감 기술을 가 지역에 건적, 입<br>찰 제안서와 함께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허가면제*** |
|                | 허가면제(1~9)에 따른 사후거래보고***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일        | 반기   | 연간      |
| 포괄<br>수출<br>허가 | 사용자포괄허가<br>(가 지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| ○    | ○****   |
|                |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년        | 3년   | 3년      |
|                | 사용자포괄허가<br>(나·의1 지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         | ○    | ○****   |
|                |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2년)      | 2년   | 3년      |
|                | 품목포괄허가<br>(나·의2 지역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         | △    | ○       |
|                |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3년)      | (3년) | 3년      |
| 중개<br>허가       | 정기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적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기        | 반기   | 연간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운영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간        | 연간   | 연간      |
|                | 10. 고시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<br>(나·의2 지역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| 허가면제 | 허가면제    |
|                | 허가면제(10)에 따른 사후거래보고****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일        | 반기   | 연간      |

\*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해당 체제에서 소관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

\*\* 모회사의 국내법인인 수출자가 동일한 모회사의 해외법인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

\*\*\* 다만, 관련 품목의 설계, 생산,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의 기술인 경우는 제외

\*\*\*\* 통제번호 5자리를 기준으로 포괄수출허가 신청 및 발급 가능

\*\*\*\*\* 고시 제26조제1항, 제2항 각 호 및 제6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

※ 민감·초민감품목, 원자력 전용품목,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Category I 품목 및 군용물자

품목은 개별수출허가의 특례 적용을 제외하며, 포괄수출허가의 대상품목은 별표8을 따른다.

※※ 허가면제(1~9 또는 10) 관련 사전신고(별지 1호의4)를 한 경우 사후거래보고는 생략 가능